

울산광역시 동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674호 2026. 6. 18.(목)

훈 령

-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운영 규정 1

고 시

- 도로명주소 고시 5

공 고

- 공유수면 무단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6
-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16

안 내	○ 동구 전자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정기)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수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동구 홈페이지(www.donggu.ulsan.kr) → 동구소식 → 고시/공고 → 동구공보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 동구

편집 : 기획예산실(☎ 209-3047, 행정 3047)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류재균

2026년 6월 18일

울산광역시 동구 훈령 제326호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활동과 정서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이하 “복합문화공간”이라 한다)의 명칭은 “T:IM(틈) 1219”로 하고, 위치는 울산광역시 동구 번덕 1길 65로 한다.

제3조(이용자의 범위) ① 복합문화공간의 주된 이용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연령의 청소년으로 한다. 이 경우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되,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복합문화공간 이용에 필요한 회원 관리는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4조(사업) 복합문화공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서 및 음반 등의 이용을 위한 공간 제공
2.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문화·예술·창작·요리·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
3. 청소년 간 소통 및 교류를 위한 공간 운영
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그 밖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시간) ① 복합문화공간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10시부터 21시까지
2. 토요일 및 일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 ① 복합문화공간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2. 임시 휴관일: 구청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강사운영 등) 구청장은 청소년 독서 강좌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외부 전문 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복합문화공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운영시간 중 복합문화공간의 도서관리, 이용자 안내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 중 봉사활동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이용 제한) ① 이용자는 복합문화공간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시설·물품 및 도서 등의 무단 반출 또는 훼손
2.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는 집회, 설문조사, 게시물 부착, 상행위, 광고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3.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경고를 할 수 있으며, 경고를 받은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 12세 ~ 19세 청소년만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복합문화공간의 목적(제1조)
- 나. 복합문화공간의 명칭·이용자의 범위 및 사업(제2조 ~ 제4조)
- 다. 운영시간 및 휴관일(제5조 ~ 제6조)
- 라. 강사운영 및 이용자 준수사항 등(제7조 ~ 제9조)

울산광역시동구 고시 제2026 - 53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8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연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1	주전동 253번지	상마을길 68	2000-12-14	2026-03-19	주전동에서 가장 위쪽에 위치하고있어 부르던 마을 이름을 반영하여 해당 도 로명을 부여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민원지적과(☎052-209-384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 604호

공유수면 무단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각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를 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2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공 고 명: 공유수면 무단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6. 12. ~ 2026. 6. 30 (18일간)
3. 처분의 제목: 행정대집행 계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4. 법적근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및 제21조(원상회복 등),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21조(처분 사전통지)
5. 위반내용: 공유수면 구역 내 무단점용 및 불법 시설물 설치
6. 공시송달 대상 및 처분내용

위 치	행위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처분 내용
주전동 140-9	미상	공유수면 구역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주전동 755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6. 30. 까지

나. 제 출 처: 울산광역시 동구청 건설과 (☎ 052-209-3635)

다. 제출방법: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라. 기타사항: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나. 공유수면 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건설과 제2026 - 604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수령인: 미상

주 소: 미상

공유수면 구역 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사용하고 있는 귀하 소유의 시설물, 적치물 등으로 인하여 민원 발생과 공유수면 관리상의 문제(환경훼손, 통행·이용 저해, 유수의 흐름 방해 등)를 야기하고 있는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원상회복 등)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2026년 6월 30일(화)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며 이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울산광역시 동구청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또는 종류	대집행 방법
주전동 140-9	가설건축물	철 거

2026년 6월 12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울산광역시 동구 건설과 제2026 - 604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수령인: 미상

주 소: 미상

공유수면 구역 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사용하고 있는 귀하 소유의 시설물, 적치물 등으로 인하여 민원 발생과 공유수면 관리상의 문제(환경훼손, 통행·이용 저해, 유수의 흐름 방해 등)를 야기하고 있는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원상회복 등)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2026년 6월 30일(화)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며 이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울산광역시 동구청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또는 종류	대집행 방법
주전동 755	가설건축물	철 거

2026년 6월 12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공유수면 내 불법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공유수면 내 불법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당사자	성명(명칭)	미상					
	주 소	미상					
	불법행위 위치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동 140-9 번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공유수면 구역을 불법 점용하여 사용함에 따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위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원상회복 등)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청	부서명	건설과	담당자	엄정연
		주소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			전화번호	052-209-3635
		전자우편 주소	3156yun@korea.kr			팩스번호	052-209-3629
	제출기한		2026년 6월 30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공유수면 내 불법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공유수면 내 불법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당사자	성명(명칭)	미상					
	주 소	미상					
	불법행위 위치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동 755 번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공유수면 구역을 불법 점용하여 사용함에 따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위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원상회복 등)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청	부서명	건설과	담당자	엄정연
		주소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			전화번호	052-209-3635
		전자우편 주소	3156yun@korea.kr			팩스번호	052-209-3629
	제출기한		2026년 6월 30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공유수면 무단점용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주전동 140-9번지

위치도



현장사진



□ 주전동 755번지

위치도



현장사진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 623호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점유자의 성명 및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8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공 고 명: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6. 18. ~ 2026. 7. 2. (14일간)
3.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4. 공시송달 대상 및 계고 내용

구분	위 치	행위자	계고 내용
국유재산	서부동 955-39	미상	울타리, 적치물, 경작물 등 무단점유 시설물 일체 철거 및 원상복구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별첨
	화정동 929		
공유재산	화정동 15		
	화정동 17		
	화정동 232-1		
	화정동 산28		

5. 이행기한: **2026. 7. 8.까지**

6. 계고사항: 위 이행기한까지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이 직접 철거 등 대집행을 실시하며, 그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예정입니다.

7. 기타사항

가.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라 의무자로부터 징수됩니다.

나. 본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건설과(☎052-209-36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건설과 제2026-623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국·공유재산 내 「국유재산법」 제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물 및 무단 경작 행위로 인해 재산의 적절한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2026년 7월 8일까지** 해당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며 이에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울산광역시 동구청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구분	위치	대상 또는 종류	수량	대집행 방법
국유재산	서부동 955-39	울타리, 적치물, 경작물 등 무단점유 시설물 일체	1식	철거
	화정동 929		1식	
공유재산	화정동 15		1식	
	화정동 17		1식	
	화정동 232-1		1식	
	화정동 산28		1식	

2026년 6월 18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무단점유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서부동 955-39(천)

위치도



현장사진



□ 화정동 929(천), 화정동 15(답), 화정동 17(답), 화정동 232-1(도), 화정동 산28(임)

위치도



현 장 사 진







